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 MINISTRY OF STRATEGY
 AND FINANCE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일시 | 2010. 6. 23(수) 배포시 | | |
| 배포일시 | 2010. 6. 23(수) | 담당부서 |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|
| 담당과장 | 송준상 과장(2150-4510) | 담당자 | 김민규 사무관(2150-4515) |

제목 : “상품거래소, '12년 1월 금거래소부터 도입한다” - 「상품(금)거래소 도입방안」 확정·발표 -

□ 정부는 6.23일 (수) 위기관리대책회의(기획재정부 장관 주재)에서
 「상품(금) 거래소 도입방안」을 확정·발표하였음

※ 별첨 : 「상품(금) 거래소 도입방안」

< 주요 관계부처 연락처 >

| 부처·담당과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금융위 자본시장과 | 정완규 과장 | 2156 - 9870 |
| | 김성조 사무관 | 2156 - 9875 |
| 지경부 미래생활섬유과 | 이경호 과장 | 2110 - 5651 |
| | 정두식 사무관 | 2110 - 5654 |
| 지경부 석유산업과 | 유연백 과장 | 2110 - 4890 |
| | 김창환 사무관 | 2110 - 5456 |
| 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| 김태주 과장 | 2150 - 4230 |
| | 김정주 사무관 | 2150 - 4234 |
| 재정부 소득세제과 | 임재현 과장 | 2150 - 4150 |
| | 박지훈 사무관 | 2150 - 4151 |
| 재정부 산업관세과 | 주태현 과장 | 2150 - 4430 |
| | 조용래 사무관 | 2150 - 4432 |
| 농식품부 농산경영과 | 민연태 과장 | 500 - 1986 |
| | 홍인기 사무관 | 500 - 1990 |

기획재정부 대변인

별첨

유통선진화 및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
「상품(금)거래소 도입방안」

2010. 6. 23.

관계부처 합동

■ ■ 목 차 ■ ■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경과 | 1 |
| II. 상품거래소 현황 및 필요성 | 2 |
| III. 상품거래소 도입 추진방향 | 4 |
| IV. 금거래소 도입방안 | 6 |
| 1. 기본방향 | 6 |
| 2. 세부 도입방안 | 7 |
| (1) 거래소 도입방식 | 8 |
| (2) 규제·감독 체계 | 8 |
| (3) 운영체계 | 9 |
| (4) 거래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| 14 |
| (5) 금 선물시장 활성화 방안 | 15 |
| V. 금거래소 도입시 기대효과 | 16 |
| VI. 향후 추진일정 | 17 |

I. 추진경과

□ '07.7 경제정책조정회의 「귀금속·보석 산업 발전방안」 발표

- 후진적 금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금거래소 설립 및 유통 구조 혁신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상품거래소 도입 검토 발표

* '08.12~'09.6 「금(또는 상품)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」 연구용역 실시

- 용역수행 : 한국조세연구원(김재진 박사(책임연구원), 홍범교 박사), 장근호 교수(홍익대), 송치영 교수(국민대)

□ '09.11 위기관리대책회의 「상품거래소 설립방안」 토의

- 금 등 가능한 품목부터 도입하여 취급상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 추진

-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

□ '09.12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, 업계 등으로 금, 농산물, 원유·석유제품 등 상품별 「상품거래소 설립 T/F」 구성

- 금 현물거래소, 쌀 선물거래, 원유·석유거래소의 추진 가능성과 도입방안 논의

【 상품거래소 설립 TF 개요 】

- (구성) 재정부, 금융위, 지경부, 농식품부, 국세청, 한국거래소, 업종별 협회, 조세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, 용역연구진 등
- (분과) 금 분과, 농산물 분과, 석유·원유분과
- (활동) '09.12월 Kick-off 하여 수시로 분과별 회의 개최

Ⅱ. 상품거래소 현황 및 필요성

1. 상품거래소 현황

□ 상품거래소는 거래상품과 단위, 시간 등이 표준화, 규격화 되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시장

* 금융거래소와 달리 실체가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하므로 상품 품질관리·보관 등에 필요한 제반 infra 필요

□ 세계 상품거래소 현황 (※참고3. 해외 주요 상품거래소 현황)

○ (주요 상품거래소)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(CME), 영국 금속거래소(LME), 일본 동경공업품 거래소(TOCOM) 등

- 초기 개별상품거래소 → 점차 통합·중복배제 방향으로 개편

* (美) 시카고 상업거래소(CBOT), 뉴욕상품거래소(NYMEX)는 M&A를 통해 시카고 상품거래소(CME group)로 합병

(日) 현재 별도로 운영중인 상품 및 금융거래소를 하나의 지주회사 하에 금융거래소와 상품거래소로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

○ (취급상품) 농산물과 원자재, 귀금속 등이며 최근 은실 가스배출권, 날씨선물 등 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

- 현·선물 상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기반파생상품의 거래 증가

* 세계 상품기반파생상품거래량(단위 : 백만계약)

(‘04) 727 → (‘05) 831 → (‘06) 1,097 → (‘07) 1,396 → (‘08) 1,825 → (‘09) 2,309

○ (규제체계) 별도 위원회(美, 상품선물거래위원회)를 두거나 실물부처에서 감독(日, 공산품 - 경제산업성 / 농산물 - 농림수산성)

*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는 상품거래소법,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에 의해 규제되며 상원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위원으로 구성

□ 우리나라는 현재 별도의 상품거래소는 없으며 금 선물(99년 상장), 돈육선물(08년 상장)등 일부 상품선물이 한국거래소(KRX)에 상장

2. 상품거래소 도입의 필요성

① 우리나라의 일부 주요 상품시장은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가격·시장정보 제공 및 품질 규격화가 미비하여 거래비용이 높음

➔ 상품거래소의 표준화된 거래를 통해 탐색비용 절감, 유통체계 단순화 및 음성거래 축소 등 유통시장 선진화 필요

【 주요상품별 유통체계 문제점 】

- (금) 전체 유통량 120~150톤(약 5조원) 중 밀수·무자료거래 등 음성시장이 60~70%를 차지하는 등 유통시장이 낙후되어 귀금속 산업 생산기반 취약
- (농산물) 복잡한 유통과정에 따른 비용이 높고 풍·흉작에 따른 가격변동을 관리할 선물시장 등 수급관리시스템 미비
- (석유 등 원자재)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 및 과점체제로 가격결정과정 불투명

② 우리나라 상품 파생상품(금선물, 돈육선물)은 선물시장 가격의 기초가 되는 현물시장 가격 불투명 등 기초 인프라 미비로 거래가 부진

* 09년 코스피200옵션 일평균 거래량 (1,155만 계약, 세계1위)

* 09년 상품(금, 돈육)선물거래량 15,434계약 (전체 파생상품거래량 31억 계약)

➔ 상품 현물시장의 효율화를 통해 선물 등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필요

③ 실물·금융 부문의 해외 리스크 완화 Infra 측면

○ 우리나라는 원유 등 원자재 수입규모가 크에도 국내 원자재 거래소는 없는 상황

* 총수입액 중 원자재 비중(08년) : 62.4% (2,716억\$), 에너지 해외의존도(08년) : 96.7%

➔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식량작물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·거래하여 해외 수급동향 변동에 따르는 불확실성 완화

Ⅲ. 상품거래소 도입 추진방향

추진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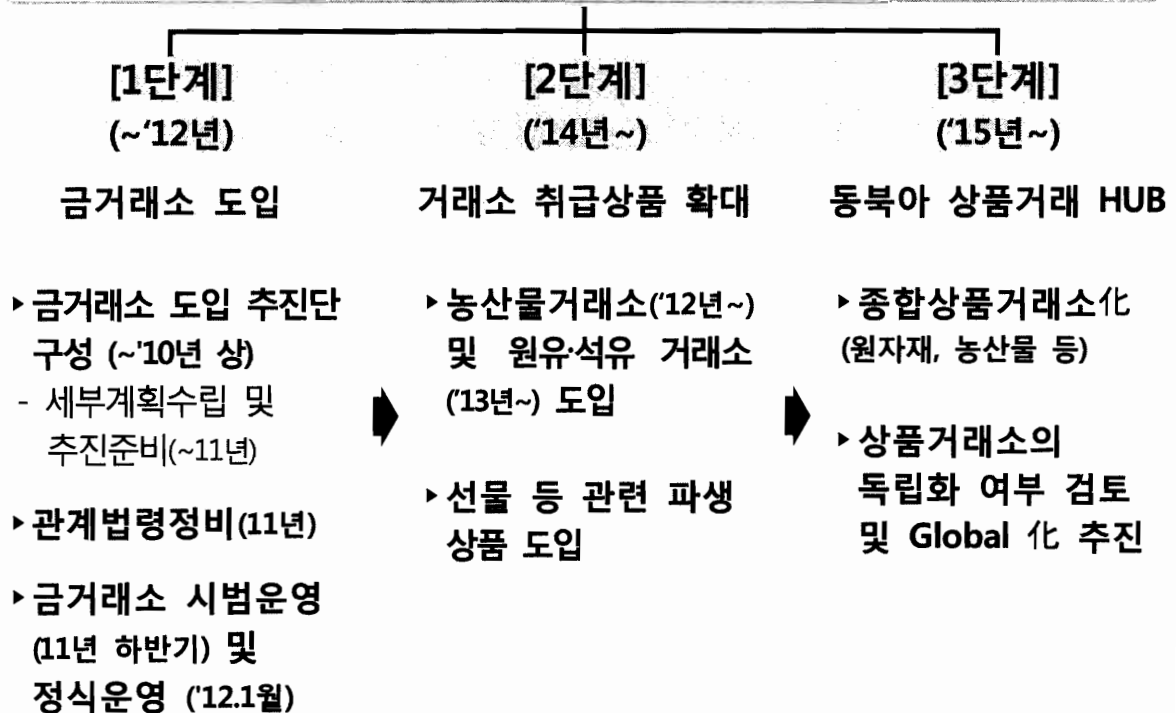
- ◆ 거래소를 통한 유통구조 혁신
- ◆ 동북아 허브 상품거래소 구축

도입방향

- ▷ 유통혁신이 필요한 상품대상
- ▷ 현실적으로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
- ▷ 거래소 중심 유통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유인제공

단계별 추진전략

- [1단계] 상품거래소의 Pilot Project로 금거래소 도입
- [2단계] 금거래소의 Know-how를 바탕으로 취급상품 확대
- [3단계] 동북아 상품거래 허브로 도약



□ 상품거래소 도입방향

- 상품거래소를 일시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 측면* 존재

* 상품거래소 도입의 현실적 제약

- ① 품질 관리 등 기반infra가 미비하고 시장형성가격에 대한 신뢰 부족
- ② 일부 업종의 경우 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거래소 참여 동기가 제한적
- ③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소득·매출의 노출을 우려하는 문제

⇒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품 중심으로 도입하고, 여건 성숙 정도에 따라 취급범위 확대

□ 단계별 추진전략

[1단계] 금거래소 도입 (12.1월)

-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infra 등 도입준비가 용이한 금거래소 도입을 우선 추진

[2단계] 거래소 취급상품 확대 (14년~)

(※ 참고4. 원유·석유, 농산물 거래소 도입계획)

- (원유·석유) 오일허브* 등 기반 infra 구축이후 '13년 이후 원유거래소 도입 추진 (지경부)

* 오일허브 : 동북아 지역 석유·원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저장시설로서 오일물류기능 및 선물시장 등 금융거래 기능 수행

- 석유는 상품거래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 등 여건조성 후 도입 추진

- (농산물) '10년 조곡의 현물거래 시스템*을 구축하고 거래 추이를 보아 '12년까지 거래소 도입여부 검토 (농식품부)

*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 거래소 내에 현물거래 시스템 마련(10.4월)

* 선물거래방안 연구용역 추진 ('10년 중, 한국농촌경제연구원)

[3단계] Global 종합 상품거래소화 추진 (15년~)

- 거래 실적 등을 보아 별도 상품거래소로의 독립여부 검토 등

IV. 금거래소 도입방안

1. 기본방향

◇ 금거래소가 유통구조 혁신 및 금융시장 선진화 Infra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, 수익구조 등 운영상의 비즈니스 측면도 감안

① 유통구조 혁신 Infra로서의 거래소

- 거래자간의 신뢰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여건을 감안시
- 표준화·규격화된 거래를 제공하는 상품거래소를 통해 음성거래 축소 및 유통체계 단순화 등 유통시장 선진화 촉진

* 영국은 업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품거래소 형태가 아닌 런던금시장 협회(LBMA)를 통한 업자간 자율 장외거래(OTC) 형태로 금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중국, 터키는 현물상품거래소 형태로 운영

② 금융시장 선진화 Infra로서의 거래소

- 외국의 경우에는 현물거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품거래소가 선물시장 중심으로 진화하였으나,
- 우리는 선진화된 금 현물시장이 未구축되어 선물시장 형성이 어려운 바 현·선물시장 육성을 병행하는 전략 필요

* 금 선물시장은 99년 최초의 '상품기반 파생상품'으로 도입되었으나 금 현물시장의 음성화, 현물업자의 참여부족 등으로 거래 부진

* 금 선물 일평균 계약수(건) / 금액(백만원)
: (06) 0 / 0 → (07) 2 / 34 → (08) 5 / 157 → (09) 7 / 276 → (10.1q) 0.5 / 23

③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거래소 구축

- 금거래소가 자체수입을 통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

※ 해외 주요 금 거래 시장현황

| | 미국 | 일본 | 중국 | 영국 | 터키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거래 기관 | ○ 뉴욕상품 거래소 (COMEX Division) | ○ 동경공업품 거래소 (TOCOM) | ○ 상해황금 거래소(SGE) ○ 상해선물 거래소(SHFE) | ○ 런던금시장 협회 (LBMA) | ○ 이스탄불 금거래소 (IGE) |
| | ○ 거래소 | ○ 거래소 | ○ 거래소 | ○ OTC | ○ 거래소 |
| 취급 대상 | ○ 선물 | ○ 선물 | ○ 현물 : SGE ○ 선물 : SHFE | ○ 현물, 선도 | ○ 현물, 선물 |
| 거래량 | ○ 3,838만계약('08) | ○ 1,516만계약('08) | ○ 현물 4,464톤('08) | ○ 8,325톤('08) | ○ 337톤('08) |

2. 세부 도입방안

◇ 요약 ◇

1 도입방식

- 한국거래소(KRX)내에 금 현물시장개설
- KRX에 관계부처·전문가로 구성된 금 전문심의기구 설치

2 규제·감독체계

- 금융위 및 현물소관부처 협조로 규제
- 현물 유통관련법 제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

3 시장 운영 및 인프라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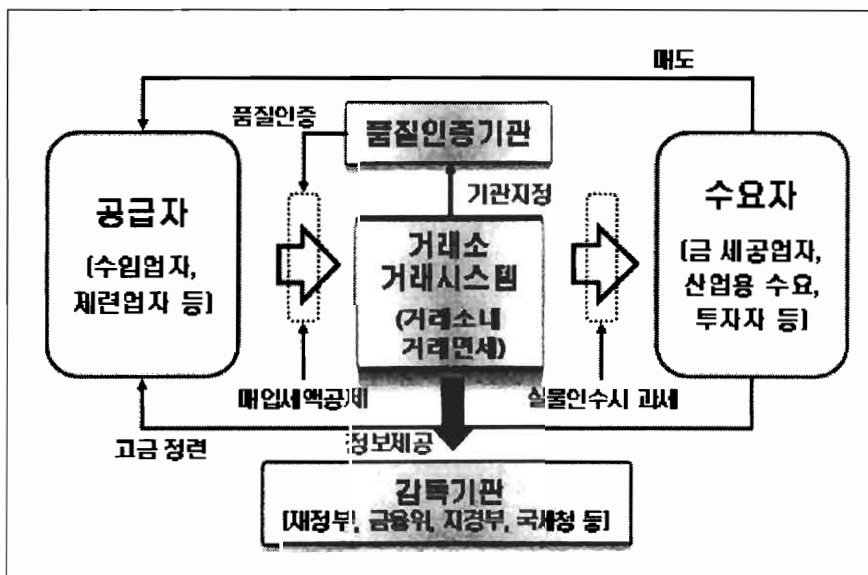
- 회원 : 금융투자업자 및 금 현물취급업자가 회원으로 참여
- 거래대상 : 지경부 지정 품질인증기관이 인증한 금지금
 - *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기준을 인증받은 수입금은 국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
- 매매·예탁보관 등 :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(KRX, 예탁원) 활용

4 인센티브

- 세제상 혜택(부가세, 관세, 소득세 등)+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

5 금 현물취급업자의 선물시장 참여 제도화 등 금 선물 시장 활성화 병행

【금거래소 거래체계도】



[1] 거래소 도입방식

- 기존 infra 활용 등 설립·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금 현물 시장의 자체운영이 가능하고 시행착오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한국거래소(KRX) 내에 현물시장 개설
 - 다만, 추후 금지금 거래 확대 및 여타 상품 추가로 별도의 규제체계 필요시 독립된 상품거래소 설립도 검토
 - KRX 내 현물시장 개설시 실물상품거래 관련 규율이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,
 - 업계, 전문가, 관계부처로 구성된 전문심의기구를 KRX에 설치하고 제도개선·규정 개정시 사전 심의

[2] 규제·감독체계

- 금융위와 현물소관부처(재정부, 지경부, 국세청 등)등이 협조하여 자본시장 인프라를 통해 감독
 - * 해외의 상품(금) 거래소 규제체계
(美)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회 (상품선물거래위원회), (日) 경제부처 (경제산업성),
(中) 현물 : 중앙은행 / 선물 : 중국증권감독위원회,
(英) 장외시장(OTC)으로 협회 및 금융당국 협의로 자율규제
 - (근거법률) 현물소관부처(지경부)가 현물 유통관련법을 제정하여 장내거래 관련사항을 현물거래의 특성을 반영·규율하되, 자본시장법의 필요한 규정을 준용
 - KRX內 금 현물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병행
 - * (유사 입법례) 부동산투자회사법,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도 자본시장법에서 필요한 규정을 준용하고 여타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입법

【 현물 유통관련 법률안 주요내용(지경부)】

- (장내거래) 매매, 청산, 결제, 예탁 등 장내 거래 사항(자본시장법 준용)
- (품질관리) 금지금 품위인증 기준, 인증기관 지정 기준
- (업체관리) '모범금거래업소'의 지정기준, 불법행위 관리 기준

○ (거래소 규정) KRX는 「상품시장 업무규정」을 제정하여 금거래소 운영 등에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비

- * KRX 규정은 관련부처와 금융위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
- 현재 규정 : 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」,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」, 「회원관리규정」, 「시장감시규정」 등

(3) 운영체제

【 회원제도 】

□ (회원신청자격) 금융투자업자 뿐만 아니라 현물취급업자에 대해서도 회원신청 자격부여

- *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은 '자본시장법 상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'로 회원자격을 한정

○ 현물취급업자는 현물 유통관련법의 '모범금거래업체'로 지정(지경부 장관)*된 경우 회원신청 자격 부여

- * (예시) 일정 규모 이상의 건실한 재무구조, 성실한 과세실적 등을 갖춘 업체

□ (회원) 금융투자업(투자매매·중개업) 인가를 받은 자와 모범 금거래업자로 지정된 현물취급업자 중 KRX 전문 심의기구 심의 및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

○ 회원종류는 기존의 KRX회원과 동일하게 매매전문회원 및 결제회원으로 구분

- * (매매전문회원)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만 할 뿐, 매매에 대한 결제는 결제회원에 위탁하여 수행
- * (결제회원)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매매는 물론 결제(자신명의 매매결제 + 매매전문회원명의 매매결제)도 가능한 회원
- 결제회원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에 비해 더 엄격한 자격요건 필요

- 회원자격은 금 상품 및 유통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무적 기준, 물적·인적기준, 유지조건 등을 별도 마련
- 회원업체에 대해 자기거래에 필요한 전산 infra 등을 제공

【 중국 상해황금거래소(SGE)의 거래소 회원 】

- 일정 요건*을 갖춘 은행, 금 공급·수출업자로 업무범위에 따라 3가지로 구별
 - * 신용상태 및 경영이력이 양호할 것, 5백만 위안 이상의 순자본 보유, 회계관리시스템 및 금거래 관리시스템을 구비할 것 등
- 금융회원(자기거래, 기관위탁거래, 개인위탁거래), 일반회원(자기거래, 기관위탁거래), 자기거래회원(자기거래)

【 거래대상 금지금 순도 및 규격(안) 】

※ 거래대상 상품의 순도 및 규격은 거래소 규정 제정시 금거래업자의 수요 및 시장유동성을 감안하여 최종확정할 예정

- (규격) 거래 용이성, 금지금 제련시 소요비용 및 일반적인 통용성을 고려하여 1kg, 100g, 50g 등으로 규정
- 최소 현물인수도 가능중량은 금제품 제조업체가 취급하는 최소단위인 100g으로 규정

- (순도) 지경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*에서 인증받은 순도 99.0%, 99.5%, 99.95%, 99.99% 등으로 규정

* 현물 유통관리법령에서 금지금 품위인증 기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며,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기준을 인증받은 수입금은 국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

** 외국 금거래소 상장 금지금 품질이 대부분이 99.0~99.99%, 국내 산업용·귀금속제품용 품질도 대부분이 99.95~99.99%

【 외국의 거래 금지금 품질 및 최소거래 단위 현황 】

| 구분 | 금지금 품질 | 거래단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런던금시장협회(LBMA) | 99.99% | 400온스 |
| 상하이황금거래소(SGE) | 99.99%, 99.95% | 50g, 100g, 1kg, 3kg |
| 동경공업품거래소(TOCOM) | 99.99% 이상 | 1kg, 100g |
| 이스탄불금거래소(IGE) | 99.95~99.99% | 1kg, 350~430온스 |
| 뉴욕상품거래소(COMEX) | 99.50% 이상 | 100온스 bar, 1kg bar |
| 홍콩황금거래소(CGSE) | 99.00%, 99.99% | 3.77kg(99.00%), 5kg(99.99%) |

□ (품질인증기관) ISO/IEC 17025* 인정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

* ISO/IEC 17025 'General requirement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' (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)

○ 대부분의 국가들의 금지금 품질인증기관은 ISO/IEC 17025 인정을 의무화

* 현재 조폐공사, LS 니꼬동제련(주) 등이 ISO/IEC 17025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KOLAS(한국인증기구,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) 인정을 획득한 국제공인시험기관 보유

* 상해황금거래소도 금의 품질기준을 충족 여부, 제련소의 승인여부, 등급 인증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을 지정

○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마크 부여, 상시 검증제도 운영 및 전자식별장치 부착 등의 업무를 담당

【 청산, 예탁·보관 및 결제 】

※ 자본시장법 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, 금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에는 현물 유통관련법에서 규정

□ (청산) 현행 증권·파생상품과 같이 한국거래소(KRX)가 CCP*로서 청산업무 수행

* 중앙거래당사자(Central Counter-Party, CCP)

□ (예탁·보관) 기존 증권의 예탁보관 및 계좌간 대체에 의한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금 예탁 및 보관 관리 업무수행

○ 예탁된 금은 예탁결제원의 금고 (일산, 여의도, 대전·광주·부산지원)에 혼합보관

- 금 현물인출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은행의 지점 금고* 등을 금 보관장소로 추가 지정·운영

* 종로, 익산 등 금 취급업체가 집중된 지역을 우선지정 대상으로 하되 예탁결제원·은행간 전산망 구축을 통해 연계 필요

○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금은 각종 담보거래 및 대차거래 활용 가능

□ (결제) 청산기관인 KRX는 청산 후 채권·채무 확정자료를
금 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에 통보

○ 예탁결제원은 금 실물과 금 거래대금을 결제회원간 동시
결제방식(DVP ; Delivery Versus Payment)으로 결제

* 실물 : 금 예탁자 계좌부상 매도수량 보유여부 확인 후 계좌대체

* 대금 : 회원사의 예탁결제원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

【 시장조성자(Market Maker)제도 도입 】

□ 개설 초기 예상되는 유동성 저하에 대응하고, 시장 조기
안정화 및 거래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장조성자* 제도 도입

* 매도·매수 최우선호가의 간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벌어질 경우
시장조성자가 그 사이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호가 갭 축소를 통한
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

○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및 현물취급업자의 시장
조성자 참여 허용

- 필요시 시장조성 역할에 대해 대가 지급, 보관·거래수수료
면제, 금 보관창고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

【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체계 】

□ 장내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
증권·파생상품과 동일하게 규제 Process 적용

○ 제재근거 등의 신설은 법률에 규율할 필요가 있는바,
현물 유통관련법에 근거규정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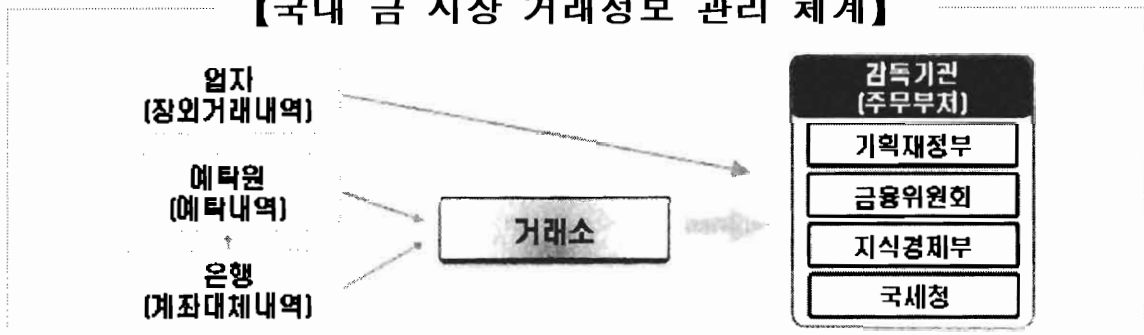
* 다만, 금 유통시장 감시 등을 위해 기존 시장감시시스템 수정·보완 필요

□ 현물취급업자 관리 및 탈세 등 불법행위 감독은 지식경제부,
국세청이 감독

【 금 거래정보 관리 】

- 금시장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**KRX는 장내 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감독기관(재정부, 금융위, 지경부, 국세청 등)에 보고**
- **금 관련 국내외 정보를 회원사에게 전산시스템으로 제공**
 - * 실시간 해외 금 시세, 관련 인터넷 site 및 자료 research 등을 통해 최신 국내외 정보를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

【국내 금 시장 거래정보 관리 체계】



【 거래소 거래금에 대한 과세 관리 】

- **실물인출되는 금지금에 대해서 예탁결제원이 징수 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세**
 - *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를 결제기관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수행하고 증권거래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과 동일 (자본시장법 제297조)
- **KRX는 회원사가 제출하는 호가내역 정보*에 위탁자(자기 매매시 회원)의 정보를 입력**
 - * 회원번호, 계좌번호, 투자자구분, 국적 및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(주문 IP address) 등과 함께 취득경로 구분(장내/외) 값을 입력
- **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탈세행위 차단 및 장내 거래 활성화 유도**

[4] 거래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

□ 거래수수료 면제

-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(KRX) 및 예탁·보관수수료(예탁결제원) 면제

□ 거래소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세

- 금지금이 거래소 내에서 실물 인수없이 계좌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는 투자금으로 보아 면세하고, 실물 인수시 과세
 - 거래소로 공급된 금지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
 - * 면세시 매출세액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원칙이나 거래소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입세액공제 허용

□ 관세율 인하

- 금거래소로 공급되는 수입 금지금에 대해 낮은 관세율 (현행3% → 1%) 적용

□ 법인세(또는 소득세) 경감

- 거래소 이용시 업체의 거래액 등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법인세(또는 소득세) 일부 공제
 - * 금거래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(또는 소득세) 산출세액의 50% 또는 금거래소 이용금액에 대한 법인세(또는 소득세) 산출세액의 5% 중 택일하는 방안 추진
 - ** (유사사례) [조특법 §122 ⑤] 금사업자의 금거래계좌를 사용한 거래액에 대해 법인세(또는 소득세) 일부 공제

□ 음성적 금 거래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

- 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 및 밀수·무자료금 등 변칙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

* (예시) ① 거래소 거래 정보 및 국세청·관세청 정보를 모범금거래업체 지정에 활용, ② 관련 업체가 집중된 종로, 익산 등 지방 세무서의 단속 강화 등

[5] 금 선물시장 활성화 방안

□ 금 현물취급업자의 선물시장 참여 제도화 (금거래소 출범시)

- (현행) 현물취급업자는 선물회사를 통한 위탁거래만 가능
- (개선) 현물취급업자가 금 현물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금 현물에 대해서는 직접 선물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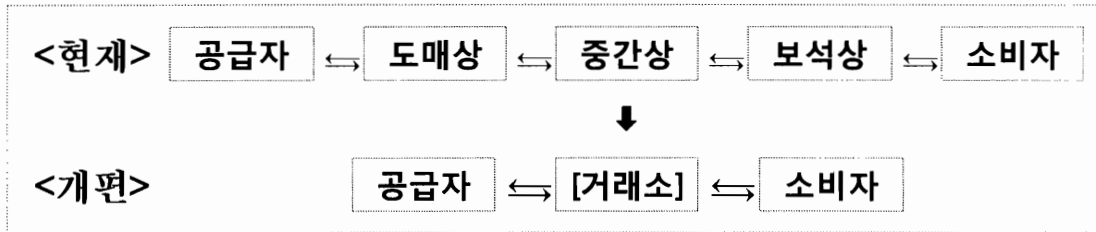
□ 미니골드(MINI GOLD, 100g) 선물 상장 추진(10년 하반기)

- (현행) 거래 단위가 1kg 한종류에 불과하고 고액이어서 이용 불편
- (개선) 100g 단위 소액거래도 가능하도록 미니골드 상품 출시

V. 금거래소 도입시 기대효과

□ 유통구조 혁신

- 공급자(수입상·제련업자 등)에서 소비자까지 3~4단계를 거치는 다층구조가 거래소 중심으로 단순화



□ 가격효과

- 정보공개·거래단계 단순화 등으로 매도·매수가 차이가 감소하여 수요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로 변화

□ 과세체계 개편

- 과세체계를 「거래소 거래금(면세)」+「거래소 외 금(과세)」으로 단순화하고 거래내역을 Network을 통해 관리하여 탈세 방지

□ 귀금속 산업 발전

- 금의 품질보증 및 거래 양성화를 통해 귀금속 업체의 고급화, 대형화 기반 마련

□ 금융시장 선진화

- 투자금에 대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금선물시장의 활성화
- 금거래 양성화로 금의 국내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국내 외환 자산이 확대되는 효과 →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

VI. 향후 추진일정

- 관계부처로 금거래소 도입 추진단*을 구성('10.6월)하여
관련업계·기관의 의견수렴 및 법령정비 등 추진 구체화

* 재정부, 금융위, 지경부, 국세청 등

- 관련업계 및 기관 등 의견수렴 ('10.7~9월)
- 법·제도 제·개정(안) 마련 (~10년말)
 - 금 관련 세제개편안
 - 현물 유통관련법 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
 - 한국거래소 업무규정

- 법령 개정(안) 국회제출(11년 상반기)

* 세제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에 제출

- 금거래소 모의거래(11년 하반기) 및 정식거래 출범(12.1월)

참고 1

부처별 금거래소 도입추진 필요사항

| 구분 | 주요내용 | 소관 | 협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① 장내 유통시장 구축 | ○ 거래소 내 금 현물시장 개설 | 금융위 KRX | 재정부 지경부 |
| | ○ 시장 운영제도 마련 * 회원 / 청산·결제·예탁(보관) /금 유통정보 관리 등 | | 예탁원 은행 등 |
| | ○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* 시장조성자 제도/ 금융권 참여방안 등 | | 재정부 |
| | ○ 금 시장 감시 및 불공정거래 제제 체계 구축 | | 재정부 지경부 |
| | ○ 거래소 거래금에 대한 과세시스템 | | 재정부 예탁원 국세청 |
| | ○ 금 선물시장 활성화 | | 지경부 |
| ② 금지금 품질 및 업체관리 | ○ 거래대상 금지금의 순도 및 규격 | 지경부 | KRX |
| | ○ 품질관리 방안 * 품질인증 기준 및 인증 기관 지정 | | 기표원 |
| | ○ 금지금 취급업체 관리방안 * 모범금거래업체 지정 등 | | KRX |
| | ○ 홍보 방안 * 모범금거래업체 홍보방안, 금거래소 홍보 등 | | 공동 |
| ③ 금관련 세금제도 개편 | ○ 관세 개편 방안 | 재정부 | 국세청 지경부 |
| | ○ 부가가치세 개편 방안 | | |
| | ○ 거래소 회원 소득세(또는 법인세) 감면 방안 | | |
| | ○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| | |
| ④ 법제정비 | ○ 자본시장법 정비 * 금 현물시장 근거 마련 등 | 금융위 | 재정부 |
| | ○ 금 현물 유통관련법 제정안 마련 | 지경부 | 재정부 |
| | ○ 금 관련 세제 및 법령 정비 | 재정부 | 국세청 지경부 |
| | ○ 거래소 업무규정 정비 | KRX | 금융위 등 |

참고 2

세계 및 국내 금시장 현황

□ 세계 금 수요는 3,659톤, 공급은 3,512톤(08년)

* 08년 세계 금수요, 공급

- (수요) 총 3,659톤 : 장식용(58.4%), 산업용(11.8%), 투자용(29.8%)

- (공급) 총 3,512톤 : 금광(58.8%), 중앙은행순매도(6.7%), 고금(34.5%)

※ 출처 : GFMS (조세연구원 용역보고서에서 재인용)

□ 국제 금가격 추이 (런던금협회 기준, 단위 : \$/온스)

○ (75년) 161 → (80년) 614 → (85년) 317 → (00년) 279 → (05년) 445
→ (10.6.15) 1,223 \$/온스 (1 온스≒31.1g)

= 48,291 원/g = 181,091 원/돈(=3.75g) (1\$=1,228원 기준)

* 일반적인 온스는 28.35g 이나 귀금속에는 트로이온스(31.1g) 사용

□ 국내 금 유통량

※ 밀수·무자료 금 등 음성시장의 존재로 인해 정확한 시장규모는 알수 없으며 수출입통계 및 업계의견 등을 토대로 추정

○ 연간 120~150톤(약 5조원)수준이며, 정상거래(30~40%)와 밀수·무자료 거래 등 음성시장(60~70%)으로 이원화

□ 국내 금시장 문제점

○ 국내 금시장은 음성적 거래 만연 및 관리·감독체계의 부재로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저해

- 무자료금 등의 성행으로 인해 정상거래가 위축되고 조세포탈로 과세질서 저해

- 귀금속 업체는 매출, 소득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영세화

* 귀금속 업체당 종사자수 2.2명, 전국 제조업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10.2명

○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의 매수·매도가격의 편차가 크며,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음

참고 3

해외 주요 상품거래소 현황

| | 미국 | 일본 | 중국 | 영국 |
|----------|--|--|--|--|
| 주요 거래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CME (시카고상품거래소) -NYMEX, CBOT는 CME그룹의 Division으로 각기 다른 상품 상장 거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TOCOM (동경공업품거래소) -TGE (동경곡물거래소) -C-Com (중앙거래소) -KEX (간사이상품거래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SHFE (상해선물거래소) -SGE (상해황금거래소) -ZCE (정저우상품거래소) -DCE (대련상품거래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LIFFE (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) -LME (런던금속거래소) -LBMA* (런던금시장협회) * OIC (장외시장) 형태 |
| 주요 취급 물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산물 · 곡물, 커피, 설탕, 유제품, 목재 등 원자재 · 프로판, 필라듐 원유, 금, 은, 알루미늄 등 기타 · 날씨, 부동산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산물 · 곡물, 커피, 야채, 옥수수, 대두 등 원자재 · 금 등 귀금속, 고철, 에너지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산물 · 옥수수, 대두, 녹두, 적두, 밀 등 원자재 · 전기동, 아연, 금 (현물, 선물), 은 등, 귀금속, 알루미늄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산물 · 곡물, 커피, 원당 등 원자재 · 구리, 납, 아연, 주석, 알루미늄, 금, 은 등 |
| 형태 | 대부분 선물 | 대부분 선물 | 대부분 선물 (SGE : 금현물) | 대부분 선물 (LBMA : 금,은현물) |
| 거래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ME group('06) 416백만계약 * NYMEX, CBOT 거래량 합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TOCOM('06) 63.7 백만계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HFE('06) 58.1 백만계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LME('06) 86.9 백만계약 |
| 규제 체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 - 상품거래소법 및 상품거래위원회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산업성(공산품), 농림수산성(농산물) - 상품거래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 - 상해황금거래소(SGE) : 인민은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감독국(FSA) - 런던금시장협회(LBMA) : 자율규제(협회, 금융당국 협의로 규율제정) |
| 비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품목 종합거래소로 출발 → 거래소간 M&A로 CME Group으로 통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산물, 설탕류 등 1품목 거래소로 출발 → 최근 상품거래소와 금융거래소 간의 관계개편 검토 중 * 例) 지주회사下에 두 거래소를 두는 방안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3년까지 선물거래소 40여개 난립 → 98년 3개만 남기고 폐쇄 (중복상품 없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거래시장이 장외시장으로 별도존재 |

참고 4

원유·석유 및 농산물 거래소 도입 추진계획

1. 원유·석유 거래소

- 원유·석유거래소 도입을 위해서는 i) 저장시설 등 인프라*, ii) 국내 석유제품 유통체계 개편이 선행**될 필요

* 원유거래소는 국제적인 원유거래의 허브역할을 목표로 하므로 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필수적임

** 거래소 거래는 참여 회원간의 수평적 지위를 기초로 하나, 국내 석유제품 유통체계는 '정유사-대리점-주유소'로 수직계열화되어 거래소 도입에 부적합

- (원유거래소) 동북아 오일허브 시범사업(여수, 울산) 등 기반 조성 후 도입('13년 이후)

- (오일허브 의미) 동북아 석유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저장시설으로써 오일물류기능 및 선물시장 등 금융거래 기능 수행

* 세계 주요 오일허브(저장규모(백만배럴), 대상지역)

美 걸프연안(109.6, 美국내), 유럽 ARA(87.4, 서유럽), 싱가포르(52.2, 中, 동남아)

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계획 】

| 구분 | 지역 | 저장규모 (구축기간) | 주요일정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단계 | 여수 | 600-1,000만B ('08-'12) | 시공업체계약(10.3월) 및 공사착수(10.8월) |
| 2단계 | 울산 | 2,308만B ^e ('10-'15) |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용역 착수(10.3월) |
| | | 450만B ^e ('16-'20) | 「항만기본계획」반영(국토부 협의, 10.10월) |

- (석유거래소) 상품거래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 등 여건조성 후 도입 추진

* 08년부터 석유유통구조 자유화 조치(수평거래 허용, 상표표시 자유화 등)가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시장의 제도변화 수용 정도가 미약

- '10년 하반기, 거래소 도입에 필요한 석유유통시장 구조개선 관련 연구착수

2. 농산물 거래소

- 거래량, 표준화 가능성, 품·홍작에 따른 가격변동 조절 필요성 측면에서 쌀의 선물거래 도입추진
 - 그러나 조곡에 대한 체계적인 선물 거래 인프라가 없고 가격선정의 기준이 되는 현물거래 system도 미흡한 실정
이므로
 - 가격지표 산출, 표준화 등을 위한 현물거래소를 우선적으로 개설하여,
 - 국내 쌀시장 현황*상 경쟁적인 거래소도입이 가능할 것
인지에 대한 market test가 선행될 필요
 - * 수입이 자유롭지 않고 수급조절에 있어 공적기능(농협 등)이 개입할
여지가 큼
- 시범적으로 사이버 현물거래시스템*을 구축(10.4월)하고
선물거래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(10년중)
- * 농수산물유통공사내의 농산물사이버거래소에 조곡 현물거래시스템을
구축하여 market test를 실시하고 선도거래 도입 검토
 - * 선물거래 도입방안 연구용역 수행중 (한국농촌경제연구원, 10.6월~)